

영등포구의회
제164회 제2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·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1. 12. 12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 朴 鍾 成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·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94호로 2011년 11월 1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
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과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
반영하고, 조례의 용어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당초 100분의 30에서
100분의 15로 하향 조정(안 제5조제1항).
- 나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74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
용도를 확대 신설(안 제6조).
- 다.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 위원회 민간인 위촉위원의 연임횟수를 한차례로
제한(안 제7조제6항).
- 라.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 위원회에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
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보완(안 제8조제4항).
- 마. 팀명칭 변경에 따라 간사 및 기금관리공무원의 명칭을 재난관리담당주사
에서 재난예방담당주사로 수정(안 제9조제1항, 안 제10조제2호).

4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이 2011.6.30자로 개정 시행되고 자치구 조례를 개정하도록 서울시에서 재난관리기금조례에 대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.

- 주요 개정내용으로는
 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7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던 것을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0분의 15로 의무예치비율이 하향 조정됨으로써 향후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규모가 증가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기금운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(안 제5조).

 - 종전의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과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기금의 용도를 개정된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금회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에서 제시한 지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확대 신설하여 재난예방활동 및 재해복구사업 등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여짐(안 제6조).

 - 또한,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현행 조항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 사료됨(안 제7조).

-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 개정(2011.5.23)으로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련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(안 제8조제4항).
- 그 밖에 팀 명칭 변경에 맞게 간사 및 기금관리공무원의 명칭을 재난관리담당주사에서 재난예방담당주사로 수정하고, 법제처의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5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서울시 자치구 조례 개정 현황 : 마포구, 용산구

관 련 법 령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67조(재난관리기금의 적립)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「지방세법」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 [전문개정 2010.6.8]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

제74조(재난관리기금의 용도)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.

1. 법 제3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
 - 가.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
 - 나.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(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·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) 및 보수·보강
 - 다. 재난피해시설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)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
 - 라.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
 - 마.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
 - 바.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·연구
2.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[전문개정 2011.6.27]

- 제75조(재난관리기금의 운용·관리)**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.
- 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고,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74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·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6.27>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10.12.7]

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

3. 운영수당

가. 위원회 참석수당

- 법령·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·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.